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감시 등 관리강화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4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범위 확대 등	3
2.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7
※ 참고자료 1: 공공-민간 소각시설 신규 설치절차 비교	23
※ 참고자료 2: 특정 시설에 대한 민간감시활동 관련 타법 사례	24
※ 참고자료 3: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현황	25

I. 제안경위

2025년 7월 30일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 감시 대상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며, 그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호다목, 제2조제3호, 제25조의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범위 확대 등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846호) 제25조의5에 따른 폐기물 처분업등을 하려는 공공기관 등을 추가하는 한편, 민간 폐기물처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나.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폐기물처리업자”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의 소각 또는 매립을 업으로 하는 자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적용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¹⁾이며, 민간 폐기물처리업자는 현행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²⁾.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설치기관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지방자치단체	69	78	1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의안번호 제2211846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제25조의5에 따라 폐기물 처분업등을 하려는 공공기관 등³⁾을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을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 2)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며,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됨.
- 3)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제25조의5(폐기물 처분업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중간처분, 최종처분, 종합처분 및 유해재활용을 업(이하 “폐기물 처분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받도록 하며,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의
규율 범위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폐기물 처분
업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2023년)]

(단위: 개소)

구분	자가처리시설		중간처분업체 (소각)	최종처분업체 (매립)
	소각	매립		
민간	95	32	74	3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범위의 확대는 폐기물 처분업등을
별도로 구분하고 수행 주체를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한정하려는 ‘폐
기물관리법 개정안’의 통과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동 내용은 직업 선택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를 위
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⁴⁾, 민간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의 99.1%를 처리하
고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적시에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
연기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법무부도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둘째,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업자를 추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소각·매립업자를 이 법의 규율 범위에 추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환경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2호와 동일하게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민간 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하는 취지가 주민감시 제도 적용 및 주변지역지원부과금 징수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의무 부과 타당성을 전제로 도입 실익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 주민감시요원을 두도록 하고, ② 환경상 영향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③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징수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26조, 제26조의2·제26조의3·제26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민감시)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을 통하여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자격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 및 폐기물처리업 자는----- ----- ----- -----.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부담금(이하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②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이자를 징수한다.</u> <u>③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이자의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6조의4(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u> <u>2. 제26조의3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u> <u>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 수익금</u>

가. 주민감시요원 제도 도입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민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⁵⁾하고 있으며,

지역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⁶⁾.

-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략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시행령 제32조)]

활동범위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이러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설 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사회 신뢰 제고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주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감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민간업체의 폐기물 반입·처리과정까지 감시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⁷⁾.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업체의 사적자치 영역을 존중하여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 확인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민

7)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및 위치·영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 반입 및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간 폐기물처리시설에의 주민감시요원 제도 도입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나. 환경 영향조사 의무화

현행법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환경상 영향조사 조사항목]

시설종류	조사분야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횟수
1. 매립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대기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소음환경기준 항목		
	다. 수질	1) 하천·지하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2) 호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호소수질환경기준항목		
		3)해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해역수질환경기준항목		
	라.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토양오염물질		
2. 소각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대기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소음환경기준 항목		
	다. 수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 단,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상 500톤미만 규모의 시설인 경우: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자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일견 타당해 보임.

다만, 현행법의 환경상 영향조사와 유사하게 민간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 중인 소각·매립시설 등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31조⁹⁾에서 3년 주기의 주변지역영향 조사와 조사결과 공개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대상 및 범위가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할

9) 「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변지역영향 조사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¹⁰⁾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환경상 영향조사 미이행에 따른 제재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공공·민간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 조사 비교]

구분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근거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6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
대상	·매립시설(일 매립량 300톤/일 이상, 부지면적 15만㎡ 이상) ·소각시설(50톤/일 이상)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장이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시설	·매립시설(매립면적 15만㎡ 이상, 지정폐기물의 경우 1만㎡ 이상) ·소각시설·소각열화수시설(50톤/일 이상) ·시멘트 소성로
주기	3년	3년
조사기관	지원협의체 협의 후 조사기관 선정	별도 조사기관 선정 기준 없음
공개	지원협의체 협의 후 공고(30일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결과 공개
벌칙	-	조치명령,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내용	<매립시설> - 대기, 수질, 소음, 악취 :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항목 - 토양: 토양환경기본법상 토양오염물질	<매립시설> - 대기: 미세먼지, 악취 - 지표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 지하수: 지하수법상 생활용수기준항목 - 토양: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10)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

<소각시설> - 대기, 소음, 수질 :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항목 (수질의 경우 500톤/일 미만은 PH, BOD, COD, SS)	<소각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화수시설> - 대기: 다이옥신, 푸란, 악취 - 지표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상 주변지역영향 조사 규정을 적용하여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폐기물소각·매립시설의 경우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강화된 협의기준¹¹⁾을 적용받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여 실시간 관리·감독되고 있으므로 환경상 영향조사 추가는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입장임.

다. 주변영향지역 결정·지원 및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부과·징수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2

1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년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규정¹²⁾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¹³⁾, 주민지원기금을 조성¹⁴⁾하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 ④ 생략

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복리 증진 사업을 실시¹⁵⁾하는 등 주변 영향지역 및 주민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민지원기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운영 주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기금 조성	①설치기관 출연금, ②반입수수료 20%, ③타지자체 가산금 10% ④기금운용 수익금, ⑤타지자체 출연금
지원 대상	-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 주민 *매립: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 소각 등: 300m 이내
사업 종류	-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 그 밖에 고시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주민지원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 금액			집행 현황				
계	전년이월	당해조성	계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	기타
417,460	233,045	184,415	162,112	8,213	54,976	2,052	96,87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징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이익 공유를 통한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¹⁶⁾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매립·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¹⁷⁾¹⁸⁾,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하나의 부과대상에 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부담금 부과 원칙¹⁹⁾을 두고 있는바 동 법의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⁰⁾.

둘째, 민간 폐기물처리업자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제조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에 반영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17) 또한, 이 경우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는 부담금을 이중으로 징수하나,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는, 단지 폐기물 처리의 위탁 여부에 따라 부담금 부담 여부가 달라지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18) 기획재정부도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20)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동 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폐기물처리비용 상승으로 폐기물 불법 적체 유인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입법례에 따르면 의무적인 주민지원사업은 모두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성을 가진 주체가 실시하고 있으며²¹⁾, 해외에서도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주변지역 주민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²²⁾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³⁾.

[주민지원사업 의무화 입법례]

사업명	관련 법령	지원 대상 및 지역	지원 규모 및 조건	관련 부처 (지원/시행)
방폐장유치지역주민지원사업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사업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시행령 제31조	·방폐장 설치지역 (경주시)	·지원수수료(드럼당 637,500원, 변동)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산업부 (사군구 및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 경관활용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4조	·대상댐(29개소) ·저수면적 또는 총저수용량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주민 ·댐/발전소와의	·댐사용권자, 수도사업자 등이 댐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비율* 출연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21) 민간사업자도 주변지역 지원 의무를 부담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사업자와 동일한 재화(‘전력’)를 생산하고 전력시장에서 경합하는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공공사업자(생활폐기물)와 민간사업자(사업장폐기물)가 다른 非재화를 처리하여 상호경합성이 성립하지 않음

22) 한국폐기물협회 등 19개 기관 공동의견

23) 또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과 유사하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기업의 공장 및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사업명	관련 법령	지원 대상 및 지역	지원 규모 및 조건	관련 부처 (지원/시행)
·댐저수사용료보조 ·홍보 및 부대사업		거리 등으로 결정된 구역 내의 주민	*전전년도 용수판매 수입금의 22%, 발 전판매수입금의 6%	
백두대간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설치사업 ·기타지원사업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시행령 11조의2	·백두대간 통과 32 개 시군 거주 주민 중 우선순위 설정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공동, 개인 공모사 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한도 설정	산림청 (사군구)
국립공원주민지원사업 ·생활개선사업 ·지역협력커뮤니티 운영 ·특화사업	·자연공원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41조의2	·접경지역 ·도서지역	·국고 80% ·지방비 20% ·사업별 지원한도 설 정	행정안전부 (사군구)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주택개량보조사업 ·연구/조사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환경/문화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시행령 제27조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국고 70-90% ·지방비 10-30% ·기본교부액, 사업계 획 및 집행, 구역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사도별 로 지원	국토교통부 (사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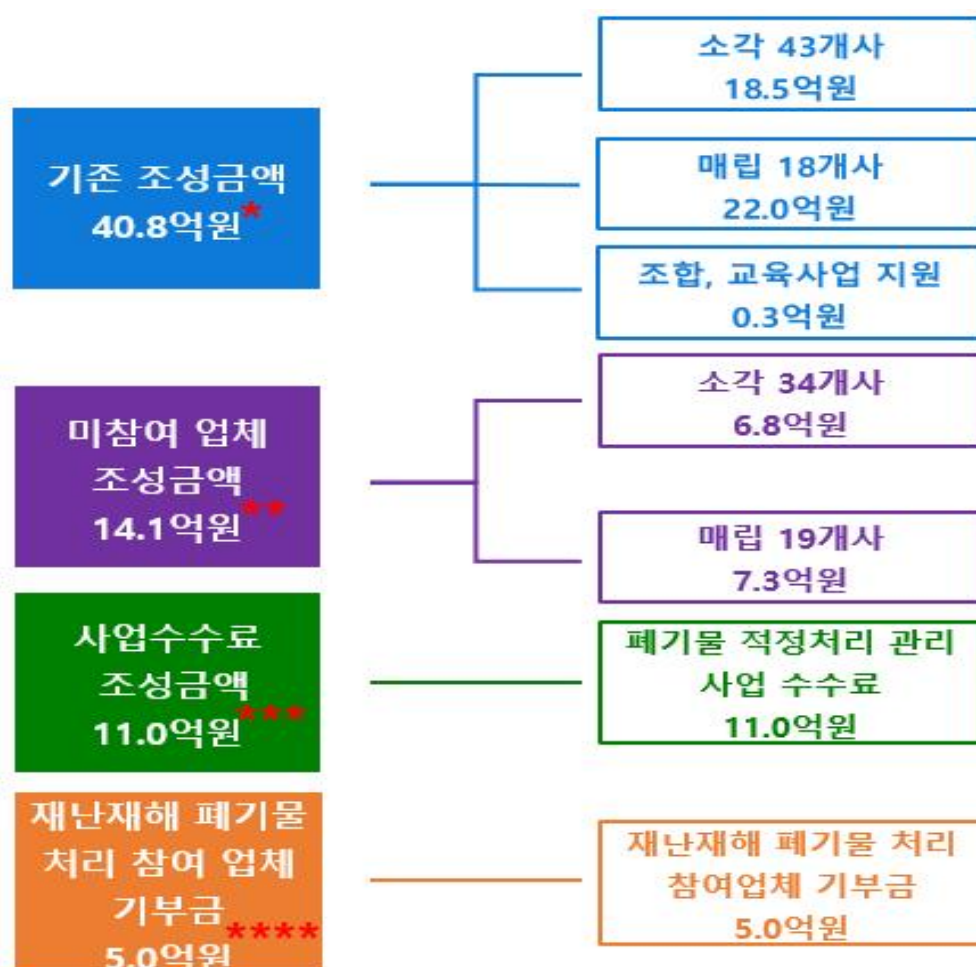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로, 민간 폐기물 소각·매립업체는 사회공헌재단 출범을 준비하
면서 기존 조성금액 40.8억원에 30.1억원을 추가한 70.9억원 규모의 사
회공헌기금 조성·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기 조성된 기금으로 장학금 등 교육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축제·주민체육대회 개최 등 주민지원사업, 지역 농수산물 구매 및
구내 식당 우선공급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신설에 앞서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업계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 사업을 재단법인의 설립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민간 폐기물 소각·매립업체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기존 조성금액은 사회공헌재단 산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총괄 납부받아 개별 업체 지역에 기존 방식으로 지원

**비조합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 포함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폐수위(수탁) 확인서 발급 사업을 준용, 조합도 생활폐기물 처리능력확인서 발급 사업을 통해 추가 조성 금액 마련

****산불, 홍수, 태풍 등 재난재해 폐기물 처리 시 일정 비율 기부금 납부

자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 19개 관계기관²⁴⁾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은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중복되며, 폐기물 처리비 인상을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의 배출시설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24) 한국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E-순환거버넌스, 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건축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한국석유재활용협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한국음식물RFID중량기협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등 19개 단체

※ 참고자료 1: 공공-민간 소각시설 신규 설치절차 비교

	<사 업 추 진 절 차>	<근 거>	<공공시설>	<민간처리업>
I 계획	① 사업 계획 수립 및 작성	-	○	○
	② 순환경제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	순환경제법 제11조	○	×
	③ 입지선정	폐측법 제9조, 10조	○	×
	④-A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	×
	④-B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판단	민간투자법 제7조제3항	○	×
	⑤ 예비타당성 조사(해당시)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 국고 300억원 이상 限 ⑥ 지방·중앙투자심사	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37조	○	×
II 설계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해당시) ※ 주민 공람공고, 설명회 포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등	○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고시	폐측법 제11조의3	○	×
	③ 공공·자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설치계획 승인·고시된 경우 설치승인 의제처리, 통합허가대상의 경우 통합허가로 설치승인 같음 민간처리업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승인) 및 제25조제2항(허가)	○	○
	④ 통합허가 ※ 대기·수질배출시설 1,2종 등 限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	○	○
	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환경상조사 포함)	폐측법 제17조	○	×
	⑥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해당시)	국계법 제30조, 제32조, 제91조	○	○
III 공사	시 설 설 치	-	○	○
IV 공사 완료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
	시 설 검 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	○
	사 용 개 시 신 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V 운영	시설 운영 및 관리	폐기물관리법 등	○	○
	음영절차는 공공시설 중 폐기물시설촉진법 대상에 한함			

※ 참고자료 2: 특정 시설에 대한 민간감시활동 관련 타법 사례

- 특정 시설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 등 민간의 감시활동이 가능토록 규정한 타 법령은 방폐물유치지역법(시행령 제23조제3호),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이 있으며,
- 위 법에 따라 민간의 감시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로서, 시설 설치·운영의 주체는 준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임
- 또한, 지역주민에게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지역사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사례(법 제23조의3)가 있으나, 타 환경법에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에 대한 근거는 없음

* 주요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주민 대피 요령 등을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함

※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에도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없음

< 타법 사례 >

법률명	시설명	설치운영주체	민간감시활동 근거	비고(근거조문 등)
방폐물유치지역법	중저준위 방폐장	준정부기관	○	시행령 제23조제3호
발전소주변지역법	발전소	공기업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민간사업자	×	법 제23조의3 (지역사회 고지의무)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민간사업자	×	-
물환경보전법	수질배출시설	민간사업자	×	-

※ 참고자료 3: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현황

① 대상 시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
 - 소각시설 :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
 -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지자체장이 설치하는 경우)

< 폐기물시설축진법 적용 대상 시설 현황('20) >

단위 : 개소

구분	계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합계	165	71	78	16
규모이상	68	17	51	0
규모 미만(조례)	97	54	27	16

② 지원 내용

【 ① 주민지원기금 】

- (운영 주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기금 조성) ①설치기관 출연금, ②반입수수료 20%(종전 10%에서 상향, '20.12.10), ③타지자체 가산금 10%, ④기금운용 수익금, ⑤타지자체 출연금
- (지원 대상)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 * 매립: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소각 등: 300m 이내
- (사업 종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 그 밖에 고시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2024년 주민지원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성 금액			집행 현황				
계	전년이월	당해조성	계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	기타
417,460	233,045	184,415	162,112	8,213	54,976	2,052	96,871

【 ② 주민편익시설 】

- (설치 주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설치 재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종전 10%에서 상향, '20.12.10) 범위 내
- (설치 방법)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설치

< 주민편익시설 적용 현황 >

구분	계	시설 종류		
		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 및 매립시설
합계	86	43	10	33
수영장	18	12	1	5
다목적체육센터	12	5	2	5
헬스시설	11	7	-	4
사우나	8	-	-	8
찜질방	7	-	-	7
에어로빅시설	6	6	-	-
축구장	6	4	-	2
테니스시설	6	3	1	2
골프연습시설	3	3	-	-
독서실	3	3	-	-
다목적복지시설	2	-	2	-
풋살구장	1	-	1	-
족구시설	1	-	1	-
배드민턴장	1	-	1	-
게이트볼장	1	-	1	-

<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단위 : 억원, %

설치 현황			운영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A)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B)	비율 (B/A)	연간 운영비 (A)	연간 운영수익 (B)	연간 순수익 (B-A)
25,744	2,819	11	1,161	839	△322

【 ③ 주민지원협의체 】

- (구성 방법)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과반수), 전문가 등 21명 이내
- (수행 기능) ①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기관 선정
②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
③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의
④ 주민감시요원 추천
- (지원 내용) 주민지원기금의 5% 범위(평균 3,100만원*)로 운영비 지원

* '20년 156개 폐기물처리시설 평균 기금 집행액: 622백만원

【 ④ 주민감시요원 】

- (구성 방법) 지원협의체가 추천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전문가, 폐기물 반입량·시간에 따라 최대 14명
- (수행 기능) ①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
②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③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④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
⑤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
- (지원 내용) 수당* 지급(지자체 조례로 정함)

* 조사된 결과는 없지만 전북 전주시는 1인당 연간 5,000만원 정도 지급